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0의5] <신설 2024. 12. 30.>

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

(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)

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할 문안	I .....[1] being the .....[2]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in this commercial invoice are originating from .....[3] and the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4(Rules of Origin) of the Korea-Philippines Free Trade Agreement. Observations/Findings[4]: Authorization Code _____ Signature _____ Date: _____
작성방법	위 문안을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. 1) 작성자의 이름 및 직위를 표기합니다. 2) 수출자(exporter), 생산자(producer) 또는 생산자 및 수출자(producer and exporter)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합니다. 3)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(the Republic of Korea 또는 the Philippines)를 기재합니다. 4) 특이사항/비고(Observations/Findings)란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. 다만, 송장에 이미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 (1) 물품의 수입자 (2) 물품의 수출자(생산자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) (3) 물품의 생산자(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 (4)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(5)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 (6) 원산지 신고일 (7) 협정 부속서 4-가 규칙 제9조에 따른 포괄신고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포괄하는 기간